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3일, 서명옥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1.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의원)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뱅뱅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현행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부터의 응급환자 전원 의뢰 요청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확장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환자 정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취득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제공하거나 전원 후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료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은 법률 시행에 앞서 별도의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 시행에 앞서 별도의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생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3. <u>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u>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이 법은 <u>공포 후 1년이 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	----- <u>공포한</u> ----- -----.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 기관등”으로, “지원”을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생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u>	3. <u>응급의료기관등-----</u> <u>-----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u>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